|  |  |  |
| --- | --- | --- |
| **국가외환관리국**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환발[2014]53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 관리부,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시 분국; 각 전국성 중국계 자본 은행: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령 [2014]제2호)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첨부문건 2에서 열거한 문건과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규정대로 집행하길 바란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즉시 관할 구역 내의 센터 지국, 지국과 중국계 자본 및 외자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집행 중에 문제상황에 처한다면,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로 연락하길 바란다. 연락전화: 010-68402313 , 68402385 .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문건: 1.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  2. 폐지 외환관리 법규  국가외환관리국  2014년12월25일  첨부문건 1: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 실시세칙**  **제1 장 총칙**  **제1조**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마땅히 본 세칙과 기타 유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의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위안화와 외환 파생상품(이하는 파생상품이라고 약칭한다) 업무를 포함한다. 파생상품 업무는 위안화 외환 선물환, SWAP과 옵션 업무로 한정된다.  **제4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 이해, 고객 이해, 실질심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고객 조사: 고객이 제공한 신분 증명, 업무상황 등 자료의 합법성, 진실성과 유효성을 성실하게 조사 확인하고, 조사 확인 과정과 결과를 서면 형식으로 기재한다.  (2) 업무 수리: 국가외환관리국의 현행 법규를 집행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업무 진실성과 합규성에 대하여 심의하며, 업무의 거래목적과 거래 성질을 이해한다.  (3)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시에 고객의 업무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객에 대해 동태적 관리를 진행한다.  (4) 문제 업무: 업무 수리 혹은 후속 모니터링 과정 중에 이상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국 또는 지국(이하는 외환국)에 보고한다.  **제5조** 은행은 마땅히 “업무 이해, 고객 이해, 실질심사" 원칙에 적합한 내부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1) 완전한 심의 정책, 의사결정 메커니즘,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일된 업무진행절차를 수립하고, 직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2) 교육 등 각종 유효한 방식과 방법을 채택하여, 작업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의 리스크통제 요구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업무직책을 숙지하도록 하며, 요구사항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한다.  (3) 직무책임제도를 구축하고, 명확하게 각 부서, 직무의 직책을 규정한다. 위법, 규정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또한 상응하는 처리를 한다.  **제2 장 시장진입과 퇴출**  **제6조** 은행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금융 업무 자격의 구비  (2) 완전한 업무관리제도의 구비  (3) 업무처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비의 구비  (4) 상응하는 업무 근무경력을 갖춘 고위관리인원과 실무인원의 구비  은행이 은행업관리감독부서가 비준한 외환업무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동시에 상응하는 외환업무경영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제7조** 은행이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마땅히 다음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의 취득  (2) 완전한 파생상품 거래 리스크관리제도 및 내부통제제도, 적절한 리스크 식별, 계량, 관리 및 거래시스템의 구비, 파생상품 업무 전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구비  (3) 은행업관리감독부서의 금융 파생상품 거래 업무자격에 관한 규정에 부합  **제8조** 은행은 스스로의 경영 수요에 의거하여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와 파생상품 업무자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의 경우,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고객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개설하는 경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개인외환관리방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리 규정에 의거, 국가외환관리국 개인 외환업무모니터링시스템과의 인터넷 접속 조건을 구비하며, 법에 의거하여 규정에 부합되게 개인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한다.  2. 영업점, 자동외화환전기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개인 본위화폐와 외화간 환전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개인 본위화폐와 외화간 환전 표식 양식은 은행이 스스로 확정한다.  (2) 파생상품 업무의 경우, 모든 파생상품 업무를 한번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또는 선물환과 옵션 업무자격을 분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물환 업무 자격을 취득한 후, 은행은 스스로 외환 SWAP 및 화폐 SWAP 업무를 개설할 수 있다.  **제9조** 은행 본점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신청 보고서  (2) < 금융허가증 > 복사본  (3)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관리규칙과 제도.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지침,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서류관리제도,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통계보고제도,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제도,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회계과목과 결산방법,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내부감사제도와 종사자 직무책임 제도,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권한부여 관리제도  (4) 업무처리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비에 대한 설명자료 구비  (5) 상응하는 업무경력을 갖춘 고급관리인원과 실무인원에 대한 설명자료 구비  (6) 은행업관리감독부서가 비준한 외환업무경영자격이 필요한 경우, 외환업무허가문서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제10조** 은행 본점이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열거하는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보고, 사업타당성보고 및 업무계획서  (2) 파생상품 업무 내부관리규칙과 제도.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1. 업무작업지침. 거래접수, 고객평가, 서류심의 등 업무절차와 작업표준을 포함.  2. 제품정가모델. 가격결정 방법과 각종 매개변수의 선택 기준과 출처를 포함.  3. 리스크 관리제도. 리스크관리구조, 리스크모형지표 및 정량화 관리지표, 리스크완화 조치, 외화준비금 리스크관리메커니즘을 포함.  4. 회계결산제도. 과목 설치와 회계결산 방법을 포함.  5. 통계보고제도. 데이터 수집 경로와 작업 절차를 포함.  (3) 주관 인원과 주요 거래 인원 명단, 이력.  (4) 은행업관리감독부서의 금융 파생상품 거래 업무자격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문서.  은행은 개설하고자 하는 각종 파생상품 업무의 실질적 특징에 의거하여, 목적성과 적합성을 구비한 문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은행 본점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와 파생상품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서 열거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수리한다:  (1) 정책성은행, 전국성 상업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에 직접 신청하고,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의 비준한다. 기타 은행은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분국, 외환관리부(이하의 약칭 외환분국)에 신청한다. 市(地, 州, 區), 縣에 소재하는 경우 ,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센터지국 혹은 지국에 신청하며, 또한 등급에 따라 외환분국에 보고하여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은행 지점은 본점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외국은행이 경내의 2개 이상 지점에서 파생상품 업무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경내 관리주체가 통일적으로 해당 은행 소재지 외환분국에 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외환분국은 수리 결과를 해당 외국은행의 기타 경내지점 소재지 외환분국에 참조 발송해야 한다.  (3) 외환국의 수리결과는 공문형식으로 정식 하달해야 한다. 파생상품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하게 간략화하여 비안통지서의 형식으로 하달할 수 있다.  **제12조** 은행 분지기구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은행 본점 및 신청기구의 상급 지점이 완전한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관리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즉, 최근 1회에 진행된 외환관리규정 현황심사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은행 분지기구는 아래에 열거하는 자료를 지참하여 사전 비안(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1. 은행 지점이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의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비안(등기)표>(첨부문건1 참조) 1식 2부, 본점 및 상급 지점의 외환관리 규정 이행 현황심사등급 증명 자료, 제9조(1) , ( 2), ( 4 ) , ( 5 )에서 정한 제공자료를 지참하여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에 비안(등기)한다.  2. 은행 지점 및 관할기구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은행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처리 비안(등기)표> 1식 2부, 금융허가증 복사본, 본점 및 상급 지점의 외환관리규정 이행 현황 심사등급 증명자료를 지참하여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에 비안(등기)한다. 그 중, 관할기구의 경우 지점이 집중적으로 비안(등기)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단, 관할기구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에서만 처리 가능하다.  3. 외환국 분지국은 은행으로부터 내용이 완전한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비안(등기) 자료를 접수한 후, <은행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업무 처리 비안(등기)표>에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관리 전용인감을 날인하여 확인하고, 동시에 비안(등기) 표 1부를 은행에 반환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제13조** 은행 분지기구가 파생상품 업무를 개설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상급 기구로부터 수권을 받은 후 수권문건과 동급 기구의 업무 준비현황 설명자료(인원배치, 실무교육, 내부관리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를 지참하여, 최소한 업무개설 20 업무일 이전에 소재지 외환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을 득해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은행은 분지기구의 파생상품 업무 처리에 대한 수권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파생상품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리스크예방 및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지기구의 경우, 수권과 거래 권한을 회수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제14조** 외환국이 은행의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파생상품 업무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행정 허가 유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중, 외환국이 은행 본점의 신청 또는 은행 지점의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비, 인원 현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에 합병 혹은 분리되거나 중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신규 설립된 은행 본점이 외환국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중 각항 외환업무 한도는 원칙적으로 합병하여 계산한다. 단,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은 본 세칙 제5 장의 유관 규정을 집행한다.  (2) 명칭 변경, 영업주소 변경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기구 정보를 처리하는 비안(등기) 표>(첨부문건2 참조)와 변경 후의 금융허가증 복사본을 지참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비준한 외환국에 비안(등기) 해야 한다. 그 중, 명칭변경과 관련된 경우, 비안(등기)을 수리한 외환국이 적합한 방식으로 은행 관할기구 소재지 외환국에 고지한다. 은행은 비안(등기)를 진행한 후 외환국에서 획득한 각항 업무자격과 유관 업무 한도를 계승할 수 있다.  **제16조** 은행 분지기구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에 합병 혹은 분리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신규 설립된 은행 분지기구가 외환국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2) 은행지점의 명칭 변경, 영업주소 변경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 지점은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기구 정보를 처리하는 비안(등기) 표>(첨부문건2 참조)와 변경 후의 금융허가증 복사본을 지참하여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비안(등기) 해야 한다.  (3) 은행 지점 및 관할기구의 명칭 변경, 영업주소 변경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월-6 월과 7월-12 월 기간중 변경은 각각 그 해 8월말 이전, 다음해의 2월말 이전에 관할은행을 거쳐 소재지 외환국에 비안(등기)(첨부문건3 참조)한다.  **제17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중지하는 경우, 업무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를 중지한 은행 또는 그의 상급 은행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중지 처리하는 비안(등기) 표>(첨부문건4 참조)를 지참하여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비준 또는 비안한 외환국에 중지 처리 비안(등기) 수속을 진행한다.  **제18조** 은행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고 받는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19조 외환국은 본 세칙의 요구에 의거하고 간편 처리, 관리감독 유효성 원칙에 따라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와 파생상품 업무의 시장진입 관리를 위한 내부작업을 완벽히 한다. 동시에 은행의 신청, 등기(비안), 보고 등 유관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한다.  **제3 장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관리**  **제20조** 은행은 중개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외환관리국의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자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장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경내 기타 기구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21조** 은행이 업무 취급과정에서 획득한 외환수입은 외환지출 지급액, 경내 외환업무의 일상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위안화 지출의 결제 지급액을 공제한 후 통일적으로 외환이익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하며, 단독으로 결제할 수 없다.  **제22조** 외자은행이 경내 외환업무의 일상적인 경영을 위해 위안화 지출액을 결제 지불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하고 거래와 관련된 진실성을 입증할 증빙을 보관 한 후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결제 방식은 월단위 사전 결제 또는 실제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결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월단위 사전결제를 하는 경우, 사전결제 금액이 전월 실질 위안화 지출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족한 부문은 실질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결제할 수 있다. 당월에 사전 결제하였으나 미사용된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제23조** 은행 이윤의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은 아래에 열거한 규정에 따르며, 은행 본점이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1) 당해 연도 외환이윤(경내기구 외환이윤, 경외 분지기구가 분배한 이윤, 지분참여한 경외기구가 분배한 이윤 포함)은 당해 연도 매 분기 후, 재무결산 결과에 따라 스스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감사 받은 연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자동 조정해야 한다. 단, 이전연도 결손이 있는 경우, 먼저 결손액을 상계처리해야 비로소 결제 처리할 수 있다.  (2) 외환결손은 장부상 확정하지 않고 이후 연도의 외환이윤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또는 위안화 이윤으로 외화매입하여 헷징할 수 있다.  (3) 예년에 유보시킨 외환이윤 결제는 후속 연도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은행이 외국측 주주의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지불하거나 외자은행의 이윤을 송금하는 경우, 예년에 누적시킨 외환이윤을 사용하거나 또는 위안화로 매입한 외환을 사용하여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 동시에, 아래에서 열거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관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본위화폐와 외화의 연결감사보고서  (2) 세무 비안(등기) 표  (3) 동사회 혹은 주주 총회의 유관 결의문건, 혹은 외자은행 본점의 송금통지  **제25조** 은행 자본금 (혹은 운영자금)의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은 아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소재지 외환분국의 비준을 받은 후에 처리해야 한다.  (1) 은행이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을 신청하는 금액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본위화폐와 외화간의 전환을 완료한 후의 "(외환자본+외환운영자금) /외환자산”과 “(위안화자본+위안화운영자금) /위안화자산” 이 기본적으로 같다.  2. 이상의 데이터는 경내기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외 관련은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외환자산을 계산할 때에는 일부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외환자산을 공제한다. 위안화자산을 계산할 때, 은행간 예금과 은행간 대출에 대해서는 결제 신청 이전 4개 분기말의 평균금액을 취한다. 운영자금과 자본은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위안화운영자금은 외국은행이 경내지점으로 책정하여 지불한 위안화운영자금(결제후의 위안화운영자금 포함)을 의미한다. 외환운영자금은 외국은행이 경내은행으로 책정하여 지불한 외환운영자금과 경내 법인은행이 자가 보유한 위안화로 구매하고 외환운영자금 과목으로 결산한 자금을 의미한다. 외환자본을 계산할 때에는 응당 미분배 외환이윤을 공제해야 한다. 단, 미분배 외환이윤이 결손인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3. 외환업무를 새로이 개설하는 중국계은행 또는 위안화 업무를 새로이 개설하는 외자은행의 경우, 처음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자본금에 대하여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은행이 외환자본금 혹은 외환운영자금을 구매하여 외환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실제 수요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술한 제1항과 제3항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은행업감독관리부서가 자본금 화폐종류에 대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인 경우, 전술한 제1항과 제3항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은행은 신청시 아래에 열거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위안화와 외화 재무상태표  3. 본위화폐와 외화간 전환 금액의 계산 근거  4. 유관 거래가 은행업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응하는 비준문건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  (3) 은행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4) 은행이 외환을 매입하여 경외직접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경내은행의 경외직접투자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본 조항에서 전술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 은행이 업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회수한 자금(이자 포함)과 기존에 지급하였던 자금의 본위화폐와 외화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다음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스스로 채무인을 대리하여 외국환 결제 및 매도(외환국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채무인과의 채권관계, 외국환 결제 및 매도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서면 증명자료를 남겨 보관한다.  (1) 채무자 파산, 도산, 영업 정지 및 정비, 경영부실 또는 은행과의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스스로 외국환 결제 및 매도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은행이 채무자 혹은 그 담보인에게서 취득한 자금출처가 합법적인 경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법원판결, 중재기구의 재결, 저당 또는 담보된 비화폐자산의 환금화(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유관 평가부서가 가치를 평가해야 함), 보증금 감액 등  (3) 채무자에 협조하여 외환관리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  경외은행이 경내에서 상환 청구하는 대출 등 발생 자산의 화폐종류와 회수한 화폐종류의 본위화폐-외화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내 관련은행에 위탁하여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를 대리하여 외국환을 결제 및 매도할 수 있다. 관련은행은 본점-지점관계, 母-子은행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은행, 동일한 기구에 속하는 지점이나 子은행, 동일한 신디케이트론 항목하에서 합작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은행 등을 포함한다.  은행이 법에 따라 경내 지분권을 양도하고 이로 인해 본위화폐와 외화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를 참조하여 상응하는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은행이 외환대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수불가 또는 채권 양도로 인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유관 회계제도에 따라 외환 대손충당금 또는 동일 금액의 위안화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스스로 외환매입하여 상계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은행이 외화로 영업세, 이자세 및 기타 세금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위안화로 결제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빙을 심사하고 이를 보관한 후에 결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세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로 계상한다. 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수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 외국환 결제 및 매도로 계상한다.  **제29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은행의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반드시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구비한 기타 은행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격을 구비한 은행의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는 기타 은행을 통해 처리할 수 없다.  **제4 장 파생상품 업무관리**  **제30조** 은행은 마땅히 자주혁신 능력과 거래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완전한 리스크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신중하게 자체 리스크관리 수준에 적합한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은행은 고객 대상으로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실제수요에 따른 거래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고객이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진실된 수요 배경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거래기초로 보유한 외환자산부채, 예기된 미래의 외환수지에 대해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고객과 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은행은 고객의 파생상품 업무가 실제수요에 따른 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성명문건, 확인서 등 진실된 수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징구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파생상품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기초 외환자산부채 혹은 외환수지의 진실성과 합규성  (2) 고객이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하는 목적 혹은 목표  (3) 본 조 제1항에서 확인한 기초 외환자산부채 혹은 외환수지와 관련하여 청산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거래적 환리스크(확정된 거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제33조** 선물환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물환 계약이 만기될 때, 은행은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관리규정을 비교 대조하여 고객 결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결제방식은 전액결제이며 차액결제는 허가하지 않는다.  (2) 선물환 계약의 만기 전 또는 만기시, 고객의 진실된 수요에 변화가 생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제공한 성명문건, 확인서 등 충분한 입증이 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징구한 후, 고객을 위해 대응되는 금액에 대한 주문정산을 처리하거나 또는 고객의 실제 수요에 따른 연장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위안화로 결산한다.  **제34조** 옵션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은행은 보통 유러피안옵션(약정기간의 만기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에 기초하여 고객 대상으로 옵션 매입 또는 매도 업무, 2개 또는 2개 이상의 옵션을 포함한 Collar Option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옵션대금(Option Premium)의 화폐종류는 위안화이다. 은행은 고객의 옵션 계약과 관련하여 리버스 포지션, 전액 또는 차액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리버스 포지션, 차액결제 화폐는 위안화이다.  (2) 은행의 대(對)고객 단일 옵션 또는 Collar Option 업무 처리와 관련된 주요한 리스크 특징은 고객의 진실된 수요 배경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옵션계약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외환수지 규모는 고객의 진실된 수요 배경이 지지하는 실제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 외환 SWAP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Near Date(먼저 도래하는 결제일) 결제 /Far Date(나중에 도래하는 결제일) 매입하는 외환스왑 업무에서, 고객의 Near Date 결제 외환자금은 외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환 현물 결제로 처리할 수 있는 외환자금이어야 한다.  (2) Near Date(먼저 도래하는 결제일) 매입/Far Date(나중에 도래하는 결제일) 결제하는 외환스왑 업무에서, 고객은 Near Date에 직접 위안화로 외환을 매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상항목 외환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거나 규정에 따라 대외로 지불할 수 있다. Far Date에 결제하는 외환자금은 국가외환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환 현물 결제로 처리할 수 있는 외환자금이어야 한다. 경상항목 외환계좌에 예치된 외환자금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결제 처리해줄 수 있다.  (3) 외환 SWAP 업무 중, 고객이 Far Date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은행이 외환 주문정산을 하는 경우, 응당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으로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6조** 통화스왑 업무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통화스왑 업무의 원금 교환은 계약 효력발생일과 만기일에 두차례 실제로 교환하는 원금, 두차례 실제로 교환하지 않은 원금, 1회에 한하여 교환하는 원금 등의 형식을 포함한다.  (2) 통화스왑 업무 중, 고객이 계약 효력발생일과 만기일에 두차례 실제로 원금을 교환하는 행위가 외국환 결제 또는 매입과 관계되는 경우, 외환스왑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1회 원금 교환이 외국환 결제 또는 매입과 관계되는 경우, 실제 수요에 따른 거래 원칙을 준수한다. 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한 외환 환리스크를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으로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3) 통화스왑 업무의 이자는 은행과 고객이 비즈니스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한다. 단, 중국인민은행의 이자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통화스왑 업무 중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이자는 당해 은행의 외환이윤으로 편입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단독으로 결제할 수 없다.  **제37조** 은행이 고객 대상으로 처리하는 파생상품 업무에 대한 화폐종류, 기한, 가격 등 거래 요소는 쌍방이 진실된 수요 배경에 의거하여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한다.  옵션 업무가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순매각대금 확정에 사용하는 참고가격은 경내의 진실되고 유효한 시장 환율이어야 한다.  **제38조** 은행이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 범위는 경내기구(임시적으로 은행 스스로는 포함되지 않음)로 한정하며, 개인사업자는 경내기구로 간주한다.  경내 개인이 외환관리 규정에 부합되는 해외투자로 인해 환리스크가 발생된 경우, 은행은 실제 수요의 거래원칙에 따라 그 파생상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 은행은 파생상품 업무와 관련된 고객관리를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또한, 파생상품 유형과 고객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고객적합성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게시해야 한다. 은행은 고객이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유효한 권한 위임과 필요한 모든 상급 주관부서의 허가를 획득하였고, 동시에 충분한 리스크수용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진실된 수요 배경을 허위로 조작하여 파생상품 업무를 전개하거나 중복하여 헷징(hedging)을 진행하는 고객에 대하여, 은행은 법에 의거하여 그와 전개하는 거래를 종지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등 내부관리제도를 통해 해당 고객이 후속적으로 파생상품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제40조** 은행이 파생상품 업무를 전개할 때 응당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파생상품 거래 지급준비금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계랑 및 관리해야 한다. 은행 분지기구가 중개 파생상품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 본점(부)이 통일적으로 주문정산, 환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통제를 진행해야 한다.  **제41조** 은행 및 경내기구가 참여하는 경외시장과의 파생상품 거래는 응당 외환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42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은행 등 외환시장 참여자를 조직하여 시장 자율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파생상품 고객관리, 리스크통제 등 업계 규범을 완벽히 하고, 외환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제5장**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  **제43조** 은행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을 아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법인이 통일적으로 심사 확정한다. 은행 지급준비금은 법인 감독관리 원칙에 의거하여 통일적으로 심사 확정한다. 은행 분지기구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 확정하지 않는다.(외국은행 지점 제외)  (2) 한도액 관리.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구간 한도액 관리를 진행한다.  (3) 권리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관리. 은행은 고객 대상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자가용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참여시 거래체결일(자금의 실제 수불일이 아님)에 지급준비금을 계상한다.  (4) 주간 심사 및 감독관리. 은행은 주간(캘린더 주간) 단위로 지급준비금을 관리해야 하며, 매 주간 업무일의 평균 지급준비금을 외환국이 심사확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5) 지급준비금 잔액은 정기적으로 회계과목과 대조 검토해야 한다. 지급준비금 잔액과 회계과목 간의 차액이 있는 경우, 은행은 연간 단위로 외환국에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 환율환산 차이 등의 합리적 사유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외환국이 직접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통계데이터 보고 오류, 보고 누락 등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외환국이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은행의 위규 상황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44조** 정책성은행, 전국성 은행,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마켓메이커(Market Maker) 직능을 행사하는 은행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 규모와 은행간 시장 거래 규모 등에 따라 통일적으로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연도 또는 정기적인 주기로 조정한다.  **제45조** 제44조 이외의 은행은 소재지 외환분국에서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심사 확정하고, 연도별로 조정한다.  (1) 직전 1년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규모가 미화 1억 달러 미만이고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상한액은 미화 5000만 달러, 하한액은 미화 -300만 달러이다.  (2) 직전 1년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규모가 미화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인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상한액은 미화 3억 달러, 하한액은 미화 -500만 달러이다.  (3) 직전 1년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규모가 미화 10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상한액은 미화 10억 달러, 하한액은 -1,000만 달러이다.  전술한 표준적으로 심사하여 확정된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상한액이 은행의 실질 업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실질 업무 수요에 의거하여 외환분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외환분국은 적절하게 상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46조** 국가외환관리국이 국제수지 및 외환시장 상황으로 인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임시 조정 및 통제해야 하는 경우, 유관 규정을 적용하여 제44조, 제45조에서 확정한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신규 신청하는 은행(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외자은행 제외)의 경우, 외환국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동시에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자격을 이미 취득하였으나 위안화 업무를 신규 개설하는 외자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위안화 업무를 처리한 후 30업무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신청하여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심사 확정 받아야 한다. 신청시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한 위안화 업무처리에 관한 허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은행이 주동적으로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의 중단을 신청하거나 위법 경영으로 인해 외환국이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응당 업무 중지 전에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종합 지급준비금 잔액을 0으로 정산완료해야 한다.  **제49조** 경내에 2개 이상 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은 해당 외국은행 본점 또는 지역 헤드쿼터가 권한을 부여한 1개 경내 지점(이하 "집중관리은행"으로 약칭)을 통해 경내 각 지점의 지급준비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집중관리은행이 소재지 외환분국에 신청하며, 신청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점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 실행에 동의하는 수권문서  2.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외자금융기구 경내 상주기구에 대한 비준문건  3. 해당 외국은행의 지급준비금 집중관리 실행에 대한 내부관리제도, 회계결산방법 및 기술지원 상황에 대한 설명자료  (2) 외환분국은 신청을 수리한 후 집중관리은행의 영업장소 현장을 실제로 방문한다.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기술시스템이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지원하는 상황을 검수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회답문건을 국가외환관리국에 동시 참조 발송하고, 또한 해당 외국은행 각 분점 소재지 외환국 분지국에 참조 발생한다.  (3) 외국은행 지점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실행한 이후, 경내 모든 분/지점의 기존 지급준비금은 집중관리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며, 집중관리은행이 통일적으로 주문정산하고 관리한다. 신규로 증가한 외국은행 분/지점을 지급준비금 집중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집중관리은행과 신규로 증가한 분/지점은 10업무일 이전에 각각 개별적으로 각자의 소재지 외환분국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4) 외국은행 지점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실행한 후 제44조, 제45조에 의거하여 지급준비금 한도액을 심의 확정하고, 일상관리를 진행한다. 그중, 업무데이터 추산과 관계된 경우, 해당 외국은행의 경내 모든 분/지점의 통합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5) 외국은행 지점이 지급준비금 집중관리를 실행한 이후, 집중관리은행 및 집중관리에 포함된 기타 분/지점이 모두 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위안화 전용계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집중관리은행은 이미 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였으나 경내의 기타 분/지점이 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분/지점은 계속하여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위안화 전용계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위안화 전용계좌의 잔액은 미화 달러로 환산하여 마이너스(-)로 집중관리은행의 지급준비금에 계상해야 한다.  **제6 장 부칙**  **제50조**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통계, 파생상품 업무 데이터, 은행 외국환결제 및 매도 종합지급준비금 등 유관 보고표와 자료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계보고제도는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각 외환분국은 매년 이메일로 국가외환국에 <(지역)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금융기구 정보표>(첨부문건5 참조), <(지역)관할내 금융기구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한도액 심의확정한 현황표>(첨부문건6 참조)를 보고 발송해야 한다. 보고 발송 시기는 매년 1월 말 이전이다. 이메일 주소는 manage@bop.safe이다.  **제52조** 명목환율, 위안화 업무를 개설하지 않은 외자은행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위안화 전용계좌 등에 대한 관리규정은 중국인민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53조** 은행이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여 본 세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4조** 비은행금융기구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 세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단, 국가외환관리국이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본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문건 2: **폐지 외환관리 법규**  1.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자은행 개편과 관계된 외환관리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 2007 ]15호)  2.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시장진입과 퇴출 관리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 (환발 [2007]20호)  3. <국가외환관리국 국제수지사의 은행 외국환 현물 결제 및 매도 업무 시장진입과 퇴출 관리와 관련한 유관 문제에 대한 회답> (환국발 [2007]11호)  4. <국가외환관리국의 개인 본위화폐와 외화간 환전을 진일보 완전하게 하는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2008]24호) 제1조  5. <국가외환관리국의 개인 본위화폐와 외화간 환전 통일 표식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 [2008]70호)  6.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환지정은행 정보 변경 비안(등기) 기한초과 위규행위 처벌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회답> (환종복 [2008]63호)  7.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환지정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경영정보 변경 후 규정에 따른 비안(등기) 미진행 위반행위 처리에 대한 회답>(환종복 [2008]117호)  8.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환발 [2010]56호)  9.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자가 외국환 결제 및 매도업무 관리를 완벽히 하는 것과 관련한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환발 [2011]23호)  10. <국가외환관리국의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을 완전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환발 [2012]26호)  11. <국가외환관리국의 외환자금 유입 관리를 강화하는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환발 [2013]20호) 제1조  12.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은행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하한액 계산 유관 문제에 대한 통지> (환종발 [2013]65호)  13.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외국은행 지점의 외국환 결제 및 매도 종합 지급준비금 관리정책 집행과 관련된 유관 문제에 대한 회답> (환종복 [2014]74호)  14. <국가외환관리국의 < 은행의 고객 대상 위안화 및 외환 파생상품 업무처리 관리규정> 인쇄 발행에 대한 통지>(환발 [2014] 34호) |  | **国家外汇管理局**  **关于印发《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实施细则》的通知**  汇发[2014]53号  国家外汇管理局各省、自治区、直辖市分局、外汇管理部，深圳、大连、青岛、厦门、宁波市分局；各全国性中资银行：  为便利银行办理结售汇业务，根据《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中国人民银行令[2014]第2号），国家外汇管理局制定了《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实施细则》（见附件1）。本细则自2015年1月1日起实施，附件2所列文件和条款同时废止。请遵照执行。  国家外汇管理局各分局、外汇管理部接到本通知后，应及时转发辖内中心支局、支局和中外资银行。执行中如遇问题，请及时与国家外汇管理局国际收支司联系。联系电话：010-68402313、68402385。  特此通知。  附件：1.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实施细则  2.废止外汇管理法规  国家外汇管理局  2014年12月25日  附件1:  **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  **实施细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便利银行办理结售汇业务，根据《银行办理结售汇业务管理办法》，制订本实施细则。  **第二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应当遵守本细则和其他有关结售汇业务的管理规定。  **第三条** 结售汇业务包括即期结售汇业务和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以下简称衍生产品）业务。衍生产品业务限于人民币外汇远期、掉期和期权业务。  **第四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应当遵循“了解业务、了解客户、尽职审查”的原则。  （一）客户调查：对客户提供的身份证明、业务状况等资料的合法性、真实性和有效性进行认真核实，将核实过程和结果以书面形式记载。  （二）业务受理：执行但不限于国家外汇管理局的现有法规，对业务的真实性与合规性进行审核，了解业务的交易目的和交易性质。  （三）持续监控：及时监测客户的业务变化情况，对客户进行动态管理。  （四）问题业务：对于业务受理或后续监测中发现异常迹象的，应及时报告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局（以下简称外汇局）。  **第五条** 银行应当建立与“了解业务、了解客户、尽职审查”原则相适应的内部管理制度。  （一）建立完整的审核政策、决策机制、管理信息系统和统一的业务操作程序，明确尽职要求。  （二）采取培训等各种有效方式和途径，使工作人员明确结售汇业务风险控制要求，熟悉工作职责和尽职要求。  （三）建立工作尽职问责制，明确规定各个部门、岗位的职责，对违法、违规造成的风险进行责任认定，并进行相应处理。  **第二章 市场准入与退出**  **第六条** 银行申请办理即期结售汇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具有金融业务资格。  （二）具备完善的业务管理制度。  （三）具备办理业务所必需的软硬件设备。  （四）拥有具备相应业务工作经验的高级管理人员和业务人员。  银行需银行业监督管理部门批准外汇业务经营资格的，还应具备相应的外汇业务经营资格。  **第七条** 银行申请办理衍生产品业务，应当具备下列条件：  （一）取得即期结售汇业务资格。  （二）有健全的衍生产品交易风险管理制度和内部控制制度及适当的风险识别、计量、管理和交易系统，配备开展衍生产品业务所需要的专业人员。  （三）符合银行业监督管理部门有关金融衍生产品交易业务资格的规定。  **第八条** 银行可以根据自身经营需要一并申请即期结售汇业务和衍生产品业务资格。  （一）对于即期结售汇业务，可以分别或者一并申请对公和对私结售汇业务。开办对私结售汇业务的，应遵守以下规定：  1.按照《个人外汇管理办法》及其实施细则的管理规定，具备与国家外汇管理局个人外汇业务监测系统的网络接入条件，依法合规办理个人结售汇业务。  2.应在营业网点、自助外币兑换机等的醒目位置设置个人本外币兑换标识。个人本外币兑换标识式样由银行自行确定。  （二）对于衍生产品业务，可以一次申请开办全部衍生产品业务，或者分次申请远期和期权业务资格。取得远期业务资格后，银行可自行开办外汇掉期和货币掉期业务。  **第九条** 银行总行申请即期结售汇业务，应提交下列文件和资料：  （一）办理结售汇业务的申请报告。  （二）《金融许可证》复印件。  （三）办理结售汇业务的内部管理规章制度，应至少包括以下内容：结售汇业务操作规程、结售汇业务单证管理制度、结售汇业务统计报告制度、结售汇综合头寸管理制度、结售汇业务会计科目和核算办法、结售汇业务内部审计制度和从业人员岗位责任制度、结售汇业务授权管理制度。  （四）具备办理业务所必需的软硬件设备的说明材料。  （五）拥有具备相应业务工作经验的高级管理人员和业务人员的说明材料。  （六）需要经银行业监督管理部门批准外汇业务经营资格的，还应提交外汇业务许可文件的复印件。  **第十条** 银行总行申请衍生产品业务，应提交下列文件和资料：  （一）申请报告、可行性报告及业务计划书。  （二）衍生产品业务内部管理规章制度，应当至少包括以下内容：  1．业务操作规程，包括交易受理、客户评估、单证审核等业务流程和操作标准；  2．产品定价模型，包括定价方法和各项参数的选取标准及来源；  3．风险管理制度，包括风险管理架构、风险模型指标及量化管理指标、风险缓释措施、头寸平盘机制；  4．会计核算制度，包括科目设置和会计核算方法；  5．统计报告制度，包括数据采集渠道和操作程序。  （三）主管人员和主要交易人员名单、履历。  （四）符合银行业监督管理部门有关金融衍生产品交易业务资格规定的证明文件。  银行应当根据拟开办各类衍生产品业务的实际特征，提交具有针对性与适用性的文件和资料。  **第十一条** 银行总行申请办理即期结售汇业务和衍生产品业务，按照下列程序申请和受理：  （一）政策性银行、全国性商业银行向国家外汇管理局直接申请，由国家外汇管理局审批。其他银行向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分局、外汇管理部（以下简称外汇分局）申请，如处于市（地、州、区）、县，应向所在地国家外汇管理局中心支局或支局申请，并逐级上报至外汇分局审批。  （二）外国银行分行视同总行管理。外国银行拟在境内两家以上分行开办衍生产品业务的，可由其境内管理行统一向该行所在地外汇分局提交申请材料，该外汇分局应将受理结果抄送该外国银行其他境内分行所在地外汇分局。  （三）外汇局受理结果应通过公文方式正式下达；仅涉及衍生产品业务的，可适当从简，通过备案通知书方式下达。  **第十二条** 银行分支机构申请办理即期结售汇业务，按照下列规定执行：  （一）银行总行及申请机构的上级分支行应具备完善的结售汇业务管理制度，即执行外汇管理规定情况考核等级最近一次为B级以上。  （二）银行分支机构应持下列材料履行事前备案手续：  1.银行分行办理即期结售汇业务，持《银行办理即期结售汇业务备案表》（见附1）一式两份，总行及上级分行执行外汇管理规定情况考核等级证明材料，并按照第九条（一）、（二）、（四）、（五）提供材料，向所在地外汇局分支局备案。  2.银行支行及下辖机构办理即期结售汇业务，持《银行办理即期结售汇业务备案表》一式两份，金融许可证复印件、总行及上级分支行执行外汇管理规定情况考核等级证明材料，向所在地外汇局分支局备案。其中，下辖机构可以由支行集中办理备案手续，但只能在下辖机构所在地外汇局分支局办理。  3.外汇局分支局收到银行内容齐全的即期结售汇业务备案材料后，在《银行办理即期结售汇业务备案表》上加盖银行结售汇业务管理专用章予以确认，并将其中的一份备案表退还银行保存。  **第十三条** 银行分支机构开办衍生产品业务，经上级有权机构授权后，持授权文件和本级机构业务筹办情况说明（包括但不限于人员配备、业务培训、内部管理），于开办业务前至少20个工作日向所在地外汇局书面报告并确认收到后即可开办业务。  银行应当加强对分支机构办理衍生产品业务的授权与管理。对于衍生产品经营能力较弱、风险防范及管理水平较低的分支机构，应当上收或取消其授权和交易权限。  **第十四条** 外汇局受理银行即期结售汇业务和衍生产品业务申请时，应按照行政许可的相关程序办理。其中，外汇局在受理银行总行申请及银行分行即期结售汇业务申请时，可以采取必要的措施核实其软硬件设备、人员情况。  **第十五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期间，发生合并或者分立，以及重要信息变更的，按照下列规定执行：  （一）发生合并或者分立的，新设立的银行总行应当向外汇局申请结售汇业务资格。吸收合并的，银行无需再申请结售汇业务资格，其各项外汇业务额度原则上合并计算，但结售汇综合头寸应执行本细则第五章的相关规定。  （二）发生名称变更、营业地址变更的，银行应持《银行办理结售汇业务机构信息变更备案表》（见附2）和变更后金融许可证复印件，在变更之日起30日内向批准其结售汇业务资格的外汇局备案。其中，涉及名称变更的，受理备案的外汇局应以适当方式告知银行下辖机构所在地外汇局；银行办理备案后，即可自然承继其在外汇局获得的各项业务资格和有关业务额度。  **第十六条** 银行分支机构办理结售汇业务期间，发生合并或者分立，以及重要信息变更的，按照下列规定执行：  （一）发生合并或者分立的，新设立的银行分支机构应当向外汇局申请结售汇业务资格。  （二）银行分行发生名称变更、营业地址变更的，应持《银行办理结售汇业务机构信息变更备案表》（见附2）和变更后金融许可证复印件，在变更之日起30日内向所在地外汇局备案。  （三）银行支行及下辖机构发生名称变更、营业地址变更的，在1-6月和7-12月期间的变更，分别于当年8月底前和次年2月底前经管辖行向所在地外汇局备案（见附3）。  **第十七条** 银行停止办理结售汇业务，应当自停办业务之日起30日内，由停办业务行或者其上级行持《银行停办结售汇业务备案表》（见附4），向批准或备案其结售汇业务资格的外汇局履行停办备案手续。  **第十八条** 银行被依法撤销或者宣告破产的，其结售汇业务资格自动丧失。  **第十九条** 外汇局应根据本细则要求，按照操作简便、监管有效原则，完善即期结售汇业务和衍生产品业务市场准入管理的内部操作；并妥善保管银行申请、备案、报告等相关材料。  **第三章 即期结售汇业务管理**  **第二十条** 银行办理代客即期结售汇业务应遵守国家外汇管理局的有关规定；办理自身即期结售汇业务应遵守本章的相关规定，本章未明确规定的，参照境内其他机构办理。  **第二十一条** 银行经营业务中获得的外汇收入，扣除支付外汇开支和结汇支付境内外汇业务日常经营所需人民币开支，应统一纳入外汇利润管理，不得单独结汇。  **第二十二条** 外资银行结汇支付境内外汇业务日常经营所需人民币开支的，应自行审核并留存有关真实性单证后依法办理。结汇方式可选择按月预结或按照实际开支结汇。按月预结的，预结金额不得超过上月实际人民币开支的105%，不足部分可继续按照实际开支结汇；当月预结未使用部分应结转下月。  **第二十三条** 银行利润的本外币转换按照下列规定，由银行总行统一办理：  （一）当年外汇利润（包括境内机构外汇利润、境外分支机构分配的利润、参股境外机构分配的利润）可以在本年每季度后按照财务核算结果自行办理结汇，并应按经审计的年度会计决算结果自动调整。但往年有亏损的，应先冲抵亏损，方可办理结汇。  （二）外汇亏损可以挂账并使用以后年度外汇利润补充，或者以人民币利润购汇进行对冲。  （三）历年留存外汇利润结汇可在后续年度自行办理。  **第二十四条** 银行支付外方股东的股息、红利或外资银行利润汇出，可以用历年累积外汇利润或用人民币购汇后自行支付，并留存下列资料备查。  （一）资产负债表、损益表及本外币合并审计报告；  （二）税务备案表；  （三）董事会或股东大会的相关决议，或外资银行总行的划账通知。  **第二十五条** 银行资本金（或营运资金）本外币转换应按照如下规定，报所在地外汇分局批准后办理：  （一）银行申请本外币转换的金额应满足下列要求：  1.完成本外币转换后的“（外汇所有者权益+外汇营运资金）／外汇资产”与“（人民币所有者权益+人民币营运资金）／人民币资产”基本相等。  2.以上数据按银行境内机构的资产负债表计算，不包括境外关联行。计算外汇资产可扣除部分政策性因素形成的外汇资产；计算人民币资产，应对其中的存放同业和拆放同业取结汇申请前四个季度末的平均数。营运资金和所有者权益不重复计算；人民币营运资金是指外国银行向境内分行拨付的人民币营运资金（含结汇后人民币营运资金）；外汇营运资金是外国银行向境内分行拨付的外汇营运资金，以及境内法人银行以自有人民币购买并在外汇营运资金科目核算的资金。计算外汇所有者权益时应扣除未分配外汇利润，但未分配外汇利润为亏损的，不得扣除。  3.新开办外汇业务的中资银行或新开办人民币业务的外资银行，首次可申请将不超过10%的资本金进行本外币转换。  4.银行购买外汇资本金或外汇营运资金发展外汇业务的，可依据实际需要申请，不受前述第1和3项条件限制。  5.银行业监督管理部门对资本金币种有明确要求或其他特殊情况的，可不受前述第1和3项条件限制。  （二）银行申请时应提供下列材料：  1.申请报告。  2.人民币和外币资产负债表。  3.本外币转换金额的测算依据。  4.相关交易需经银行业监督管理部门批准的，应提供相应批准文件的复印件。  （三）银行申请原则上每年不得超过一次。  （四）银行购汇用于境外直接投资按照境内银行境外直接投资相关外汇管理规定执行，不适用本条前述规定。  **第二十六条** 银行经营业务过程中收回资金（含利息）与原始发放资金本外币不匹配，满足下列条件的，可以自行代债务人结售汇（外汇局另有规定除外），并留存与债务人债权关系、结售汇资金来源等的书面证明材料备查。  （一）债务人因破产、倒闭、停业整顿、经营不善或与银行法律纠纷等而不能自行办理结售汇交易。  （二）银行从债务人或其担保人等处获得的资金来源合法，包括但不限于：法院判决、仲裁机构裁决；抵押或质押非货币资产变现（若自用应由相关评估部门评估价值）；扣收保证金等。  （三）不存在协助债务人规避外汇管理规定的情况。  境外银行境内追索贷款等发生资产币种与回收币种本外币不匹配的，可委托境内关联行按本条规定代债务人结售汇。关联行包括具有总分行关系、母子行关系的银行；同属一家机构的分行或子行；同一银团贷款项下具有合作关系的银行等。  银行依法转让境内股权发生本外币不匹配的，可参照本条办理相应的结售汇业务。  **第二十七条** 银行经营外汇贷款等业务，因无法回收或转让债权造成银行损失的，银行应按照有关会计制度用外汇呆账准备金或等值人民币呆账准备金自行购汇冲抵。  **第二十八条** 银行若以外币计提营业税、利息税或其他税款，且需要结汇为人民币缴纳税务部门，应当自行审核并留存有关真实性单证后办理。属于银行自身应缴纳的税收，计入自身结售汇；属于依法代扣代缴的税收，计入代客结售汇。  **第二十九条** 不具备结售汇业务资格银行的自身结售汇业务，必须通过其他具备结售汇业务资格的银行办理；具备结售汇业务资格银行的自身结售汇业务，不得通过其他银行办理。  **第四章 衍生产品业务管理**  **第三十条** 银行应当提高自主创新能力和交易管理能力，建立完善的风险管理制度和内部控制制度，审慎开展与自身风险管理水平相适应的衍生产品交易。  **第三十一条** 银行对客户办理衍生产品业务，应当坚持实需交易原则。客户办理衍生产品业务具有对冲外汇风险敞口的真实需求背景，并且作为交易基础所持有的外汇资产负债、预期未来的外汇收支按照外汇管理规定可以办理即期结售汇业务。  **第三十二条** 与客户达成衍生产品交易前，银行应确认客户办理衍生产品业务符合实需交易原则，并获取由客户提供的声明、确认函等能够证明其真实需求背景的书面材料，内容包括但不限于：  （一）与衍生产品交易直接相关的基础外汇资产负债或外汇收支的真实性与合规性。  （二）客户进行衍生产品交易的目的或目标。  （三）是否存在与本条第一款确认的基础外汇资产负债或外汇收支相关的尚未结清的衍生产品交易敞口。  **第三十三条** 远期业务应遵守以下规定：  （一）远期合约到期时，银行应比照即期结售汇管理规定为客户办理交割，交割方式为全额结算，不允许办理差额结算。  （二）远期合约到期前或到期时，如果客户因真实需求背景发生变更而无法履约，银行在获取由客户提供的声明、确认函等能够予以证明的书面材料后，可以为客户办理对应金额的平仓或按照客户实际需要进行展期，产生的损益按照商业原则处理，并以人民币结算。  **第三十四条** 期权业务应遵守以下规定：  （一）银行可以基于普通欧式期权基础，为客户办理买入或卖出期权业务，以及包含两个或多个期权的期权组合业务，期权费币种为人民币。银行可以为客户的期权合约办理反向平仓、全额或差额结算，反向平仓和差额结算的货币为人民币。  （二）银行对客户办理的单个期权或期权组合业务的主要风险特征，应当与客户真实需求背景具有合理的相关度。期权合约行权所产生的客户外汇收支，不得超出客户真实需求背景所支持的实际规模。  **第三十五条** 外汇掉期业务应遵守以下规定：  （一）对于近端结汇/远端购汇的外汇掉期业务，客户近端结汇的外汇资金应为按照外汇管理规定可以办理即期结汇的外汇资金。  （二）对于近端购汇/远端结汇的外汇掉期业务，客户近端可以直接以人民币购入外汇，并进入经常项目外汇账户留存或按照规定对外支付；远端结汇的外汇资金应为按照外汇管理规定可以办理即期结汇的外汇资金。因经常项目外汇账户留存的外汇资金所产生的利息，银行可以为客户办理结汇。  （三）外汇掉期业务中因客户远端无法履约而形成的银行外汇敞口，应纳入结售汇综合头寸统一管理。  **第三十六条** 货币掉期业务应遵守以下规定：  （一）货币掉期业务的本金交换包括合约生效日和到期日两次均实际交换本金、两次均不实际交换本金、仅一次交换本金等形式。  （二）货币掉期业务中客户在合约生效日和到期日两次均实际交换本金所涉及的结汇或购汇，遵照外汇掉期业务的管理规定。对于一次交换本金所涉及的结汇或购汇，遵照实需交易原则，银行由此形成的外汇敞口应纳入结售汇综合头寸统一管理。  （三）货币掉期业务的利率由银行与客户按照商业原则协商确定，但应符合中国人民银行的利率管理规定。  （四）货币掉期业务中银行从客户获得的外币利息应纳入本行外汇利润统一管理，不得单独结汇。  **第三十七条** 银行对客户办理衍生产品业务的币种、期限、价格等交易要素，由双方依据真实需求背景按照商业原则协商确定。  期权业务采用差额结算时，用于确定轧差金额使用的参考价应是境内真实、有效的市场汇率。  **第三十八条** 银行办理衍生产品业务的客户范围限于境内机构（暂不包括银行自身），个体工商户视同境内机构。  境内个人开展符合外汇管理规定的对外投资形成外汇风险敞口，银行可以按照实需交易原则为其办理衍生产品业务。  **第三十九条** 银行应当高度重视衍生产品业务的客户管理，在综合考虑衍生产品分类和客户分类的基础上，开展持续、充分的客户适合度评估和风险揭示。银行应确认客户进行衍生产品交易已获得内部有效授权及所必需的上级主管部门许可，并具备足够的风险承受能力。  对于虚构真实需求背景开展衍生产品业务、重复进行套期保值的客户，银行应依法终止已与其开展的交易，并通过信用评级等内部管理制度，限制此类客户后续开展衍生产品业务。  **第四十条** 银行开展衍生产品业务应遵守结售汇综合头寸管理规定，准确、合理计量和管理衍生产品交易头寸。银行分支机构办理代客衍生产品业务应由其总行（部）统一进行平盘、敞口管理和风险控制。  **第四十一条** 银行、境内机构参与境外市场衍生产品交易，应符合外汇管理规定。  **第四十二条** 国家外汇管理局组织银行等外汇市场参与者建立市场自律机制，完善衍生产品的客户管理、风险控制等行业规范，维护外汇市场公平竞争环境。  **第五章 银行结售汇综合头寸管理**  **第四十三条** 银行结售汇综合头寸按下列原则管理：  （一）法人统一核定。银行头寸按照法人监管原则统一核定，不对银行分支机构另行核定（外国银行分行除外）。  （二）限额管理。银行结售汇综合头寸实行正负区间限额管理。  （三）按权责发生制原则管理。银行应将对客户结售汇业务、自身结售汇业务和参与银行间外汇市场交易在交易订立日（而不是资金实际收付日）计入头寸。  （四）按周考核和监管。银行应按周（自然周）管理头寸，周内各个工作日的平均头寸应保持在外汇局核定限额内。  （五）头寸余额应定期与会计科目核对。对于两者之间的差额，银行可按年向外汇局申请调整。对于因汇率折算差异等合理原因导致的差额，外汇局可直接核准调整；对于因统计数据错报、漏报等其他原因导致的差额，外汇局可以核准调整，但应对银行违规的情况进行处理。  **第四十四条** 政策性银行、全国性银行以及在银行间外汇市场行使做市商职能的银行，由国家外汇管理局根据银行的结售汇业务规模和银行间市场交易规模等统一核定头寸限额，并按年度或定期调整。  **第四十五条** 第四十四条以外的银行由所在地外汇分局负责核定头寸限额，并按年度调整。  （一）上一年度结售汇业务量低于1亿美元，以及新取得结售汇业务资格的，结售汇综合头寸上限为5000万美元，下限为-300万美元。  （二）上一年度结售汇业务量介于1亿至10亿美元，结售汇综合头寸上限为3亿美元，下限为-500万美元。  （三）上一年度结售汇业务量10亿美元以上，结售汇综合头寸上限为10亿美元，下限为-1000万美元。  依照前述标准核定结售汇综合头寸上限无法满足银行实际需要的，可根据实际需要向外汇分局申请，外汇分局可适当提高上限。  **第四十六条** 国家外汇管理局因国际收支和外汇市场状况需要，对结售汇综合头寸限额临时调控的，应适用相关规定，暂停按照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核定的综合头寸限额。  **第四十七条** 新申请即期结售汇业务资格的银行（未开办人民币业务的外资银行除外），外汇局应同时核定其结售汇综合头寸限额。  已获得即期结售汇业务资格但新开办人民币业务的外资银行，应在经银监会批准办理人民币业务后30个工作日内向所在地外汇局申请核定银行结售汇综合头寸限额，申请时应提交银监会批准其办理人民币业务的许可文件。  **第四十八条** 银行主动申请停办结售汇业务或因违规经营被外汇局取消结售汇业务资格的，应在停办业务前将其结售汇业务综合头寸余额清零。  **第四十九条** 在境内有两家以上分行的外国银行，可由该外国银行总行或地区总部，授权一家境内分行（以下简称集中管理行），对境内各分行头寸实行集中管理。  （一）集中管理行负责向其所在地外汇分局提出申请，申请材料应包括以下内容：  1. 总行同意实行头寸集中管理的授权文件。  2. 银监会对外资金融机构在境内常驻机构批准书。  3. 该外国银行对头寸实施集中管理的内部管理制度、会计核算办法以及技术支持情况说明。  （二）外汇分局收到申请后，应实地走访集中管理行的营业场地，现场考察和验收其技术系统对该行头寸集中管理的支持情况。对符合条件的，批复同时抄报国家外汇管理局，并抄送该外国银行各分行所在地外汇分支局。  （三）外国银行分行实行头寸集中管理后，境内所有分支行原有头寸纳入集中管理行的头寸管理，由集中管理行统一平盘和管理。若有新增外国银行分支行纳入头寸集中管理，集中管理行及新增分支行应提前10个工作日分别向各自所在地外汇分局报备。  （四）外国银行分行实行头寸集中管理后，按照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核定头寸限额并进行日常管理。其中，涉及业务数据测算的应使用该外国银行境内全部分支行的汇总数据。  （五）外国银行分行实行头寸集中管理后，若集中管理行和纳入集中管理的其他分支行均未开办人民币业务，则适用结售汇人民币专用账户的相关规定。若集中管理行已开办人民币业务，境内其他分支行尚未开办人民币业务，则未开办人民币业务的分支行仍适用结售汇人民币专用账户的相关规定，但其结售汇人民币专用账户余额应折算为美元以负值计入集中管理行的头寸。  **第六章 附 则**  **第五十条** 银行应按照国家外汇管理局的规定报送银行结售汇统计、衍生产品业务统计、银行结售汇综合头寸等相关报表和资料，具体统计报告制度另行规定。  **第五十一条** 各外汇分局应按年以电子邮件方式向国家外汇管理局报送《（地区）结售汇业务金融机构信息表》（见附5）、《（地区）辖内金融机构结售汇综合头寸限额核定情况表》（见附6）。报送时间为每年1月底前。电子信箱为：manage@bop.safe。  **第五十二条** 挂牌汇价、未开办人民币业务的外资银行结售汇人民币专用账户等管理规定，由中国人民银行或国家外汇管理局另行规范。  **第五十三条** 银行办理结售汇业务违反本细则相关规定的，外汇局将依据《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等相关规定予以处罚。  **第五十四条** 非银行金融机构办理结售汇业务，参照本细则执行，国家外汇管理局另有规定的除外。  **第五十五条** 本细则自2015年1月1日起实施。  附件2: **废止外汇管理法规**  1、《国家外汇管理局关于外资银行改制所涉外汇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07]15号）  2、《国家外汇管理局关于调整银行即期结售汇业务市场准入和退出管理方式的通知》（汇发[2007]20号）  3、《国家外汇管理局国际收支司关于银行即期结售汇业务市场准入和退出管理有关问题的批复》（汇国发[2007]11号）  4、《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完善个人本外币兑换有关外汇管理问题的通知》（汇发[2008]24号）第一条  5、《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明确个人本外币兑换统一标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08]70号）  6、《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汇指定银行信息变更备案超期限违规行为处罚法律适用问题的批复》（汇综复[2008]63号）  7、《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对外汇指定银行经营结售汇业务信息变更后未按规定备案违规行为处理的批复》（汇综复[2008]117号）  8、《国家外汇管理局关于银行结售汇综合头寸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0]56号）  9、《国家外汇管理局关于完善银行自身结售汇业务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1]23号）  10、《国家外汇管理局关于完善银行结售汇综合头寸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2]26号）  11、《国家外汇管理局关于加强外汇资金流入管理有关问题的通知》（汇发[2013]20号）第一条  12、《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银行结售汇综合头寸下限计算有关问题的通知》（汇综发[2013]65号）  13、《国家外汇管理局综合司关于外国银行分行执行结售汇综合头寸管理政策有关问题的批复》（汇综复[2014]74号）  14、《国家外汇管理局关于印发<银行对客户办理人民币与外汇衍生产品业务管理规定>的通知》（汇发[2014]34号） |